

당진기지 건설공사
폐유리섬유 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한국가스공사 당진기지안전건설단

I. 과업개요

1. 과업명 : 당진기지 건설공사 폐유리섬유 처리용역
2. 대상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산단8로 60 한국가스공사
3.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가스공사 당진기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유리섬유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 처리하기 위한 위탁처리용역에 적용한다.
4.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30년 1월 31일
※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5. 과업내용 : 당진기지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폐유리섬유 운반 및 처리
 -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 나. 건설폐기물 계량
 - 다. 건설폐기물 처리
 - 라. 기타 폐기물 배출에 따른 인허가/부대업무와 공사의 요구사항
6. 과업물량 (물량은 실 발생수량에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적수량 정산 함)
○ 폐유리섬유 : 191.50 TON
7. 용어정의
 - 가. 발주자 및 수급인
“발주자”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가스공사』를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인”이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나. 감독자
“감독자”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다. 배출자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폐기물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 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라.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을 말한다.

마. 건설폐기물처리

“처리”란 건설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리(재활용 포함)와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바. 분리배출

“분리배출”이란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 재활용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아. 건설폐기물 분리 및 상차

“건설폐기물 분리 및 상차”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시공사가 성상별로 분리하여 지정된 폐기물 운반차량에 상차하는 것을 말한다.

자.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차.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란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6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을 말한다.

카. 계량시스템

“계량시스템”이란 현장에서 분리 선별된 건설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기 전에 중량 측정을 목적으로 설치된 계량시스템을 말한다.

타. 올바로시스템

건설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전산처리기구에 구축·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

파. 전자인계서

건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무선 등으로 입력하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II.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가스공사 당진기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유리섬유 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공사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과업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감독자 권한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가.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 나.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수급인의 책임한계
 - 가.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구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자에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안전관리 및 책임

(1) 수급인은 안전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본 용역의 수행 및 관련 안전에 관한 업무를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며 수급인이 도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도급사업주로서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가 관계법상 적합한 위험성평가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 재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등의 사전조사가 필요한 현장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발주자 및 건설공사 시공자와 사전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작업현장 내 작업자의 돌발행동, 작업절차의 임의적 위반행위, 보호구 미착용 등 작업행동을 직접 통제하여야 할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수급 수행자의 교체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리원 및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용역착수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 (1) 착수신고서
- (2)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 (3) 과업내용별 수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4) 장비투입계획
 - 임시차량을 포함한 운반차량의 적재중량 및 허가기간
 - 운반장비의 담당운전원과 차량보험증
 - 업체보유 계량기 제원 및 검교정 성적서
 - 파쇄기, 선별기 등 처리시설 보유 및 기술현황

(5) 수급인 서약서

(6) 폐기물처리 자격관련 서류

- 폐기물처리 허가증 및 수집운반허가증 등

(7) 기타 감독자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폐기물 반출 실적이 있을 경우,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 세부시행계획에는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및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매립폐기물 등 최종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량정산

건설폐기물 처리물량은 발주자가 현장에 설치한 폐기물 계량설비의 계량값 또는 공인계량소의 계량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인 자체계량 물량과 발주자 계량값의 차이가 클 경우(오차범위 5% 초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물량을 결정한다.

바. 설계변경조건

- (1)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폐기물 수량 증감이 있을 경우
- (2)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 (3) 건설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 (4)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 시
-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6.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를 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7. 보안사항
 - 가. 본 용역의 수급인은 정부 보안업무 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취급규정 및 공사 보안업무 취급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8. 보안사항 및 건설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9. 발주자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10. 발주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배출자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 할 시 수급인은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III. 특기사항

1. 건설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운반하여야 하며, 처리 및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2. 폐기물처리용역 비용은 운반, 처리(최종처리 포함) 및 이에 따른 제반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한 비용이며 폐기물 발생위치 변경에 한하여 감독과 협의 후 폐기물 운반거리 변동에 따른 조정을 적용한다.
3.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 폐기물은 성상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성상별 폐기물 수량은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5. 발주자가 현장에 건설폐기물 계량설비를 설치한 경우 폐기물 운반차량은 반드시 동 계량설비를 통과하여 폐기물 성상, 물량 및 운반차량번호 등을 담당 감독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단,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사항을 확인 받을 수 있다.
6. 폐기물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방법 등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공중 추가 계약 시 또는 공사 설계변경으로 수량증감 등이 있는 경우 감독자와 합의하여 설계변경 처리한다. 다만, 현장 재활용하는 건설 폐토석 등 수량은 정산 시 제외한다.
7.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신규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며 감독자와 합의하여 설계변경 한다. 단, 이의 처리 및 운반비용은 설계단가에 낙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8. 건설현장 시공업체의 사유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시공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동 폐기물은 감독자와 시공업체 확인 후 반출 및 처리하여야 한다.
9.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법 제18조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제19조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의 전산처리」 및 환경부 고시 제2015-226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및 확인하여야 하므로 배출자가 올바로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에 대해 처리장 반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올바로시스템에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등록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건설폐기물 수량은 당진기지 당진기지 2단계 건설공사 공사설계서 및 시공사 산출내역을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 및 정산방법은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2.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당진기지 2단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즉시 처리함이 원칙(발생당일처리)이며, 즉시 처리 불가 시 감독자의 승인 하에 관련규정에 의한 처리시한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폐기물 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13. 한국가스공사 당진기지 2단계 건설공사 시공업체와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업체와의 역무구분은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 관리를 위하여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성 상	당진기지 건설공사 시공사	위탁처리 용역업체(수급인)
폐유리섬유	건설폐기물 분리·상차	건설폐기물 운반, 처리

14.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건설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5.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고(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가능)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16. 당해 현장의 건설폐기물은 감독자의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반출 중단을 요구 할 시 수급인은 즉시 따라야 한다.
17. 위험지역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조

치를 하되, 수급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인력과 운반차량 운전자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작업 중 관리·감독의 책임, 소속작업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제3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9. 건설폐기물 운반비 산정을 위한 운반거리는 원거리 처리업체 계약 시 적기 건설폐기물처리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기본 운반거리 30km*에 계량대에서 건설폐기물 발생 현장까지 평균 이동거리 1km를 합산하여 산정하였으며, 폐기물 발생위치 변경에 한하여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적용한다.

－ 한국가스공사 「건설폐기물처리 관리지침('19.5.20.시행)」 2.3 운반비 원가 산정 기준 준용

1) 운반거리(km) : 30km+1km (1km:현장 내 이동거리 연장)

* 환경부 예규 제763호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운반거리 30km 적용

20. 건설공사는 필요시 야간작업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야간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하다.

21. 수집·운반

가.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건폐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보드·혼합건설폐기물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 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여야 한다.

마.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 바.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아. 구분된 불연성건설폐기물은 가연성건설폐기물과 수집·운반 중에 혼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 자.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차.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모든 운반차량에 대해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 될 수 없다.
- 카.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 타.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파.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하.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22. 처 리

- 가.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된다.
- 나.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거나 재 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다.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한다.
- 라.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마.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건설폐기물 처리 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 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이 곤란한 폐 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순환골재생산·판매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23. 수급인은 한국가스공사의 건설폐기물용역 적격심사기준 및 공사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계약일반조건 및 과업내용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확인 후 투찰 및 계약한 것으로,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4. 용역기간은 건설공사 공기조정에 따라 필요시 순연조정 될 수 있다.

25. 건설폐기물처리 현황내역을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및 준공 시 한국환경공단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등재 및 관련기관에 송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6. (올바로시스템)운반물량 입력

가. 건설폐기물 운반업체는 발주자(배출자)가 요구하는 장소 및 시간에 폐기물 운반차량을 투입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은 용역착수 전 운반·처리

업 허가사항에 따라 등록된 정규운반차량 또는 사전 승인된 임시 운반차량이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 운반물량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7. (올바로시스템)처리물량 입력

가. 건설폐기물 처리물량은 발주자가 현장에 설치한 폐기물 계량설비의 계량값 또는 공인계량소의 계량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발주처 계량값의 차이가 클 경우(오차범위 5% 초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물량을 결정 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 입력하여야 한다.

28.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원활한 공정진행을 위하여 감독자가 수행하는 올바로시스템 입력 및 환경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9. 건설공사 시공업체 또는 수급인의 사유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원인 제공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공사 시공업체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